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02
----------	-------

발의연월일 : 2019. 4. 8.

발의자 : 안호영 · 김현권 · 이용주

김철민 · 이용득 · 윤일규

박재호 · 이원욱 · 강훈식

최인호 · 서삼석 · 이후삼

윤영일 · 어기구 · 송갑석

이규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제66조의2).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관련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컨설팅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용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컨설팅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운영)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u>관련 전문기관</u>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2(컨설팅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1.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p> <p>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p> <p>3. 컨설팅 결과와 용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p> <p>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컨설팅 기관에 대</p>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